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재무과)

의안번호	제295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2024. 5. 23.)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을 생략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2항제4호)
- 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준일 변경(안 제16조)
- 다. 대부료·사용료·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 하향 및 횟수 확대  
(안 제33조, 제9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초지법」, 「정부조직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2024. 4. 18. ~ 5. 8.(20일간), 별도 의견 없음

####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제명을 상위법과 통일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개정함.
- 안 제4조제2항제4호 삭제 : **법 제16조제2항1)**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및 폐지 시 자치단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 제4조제2항 제4호2)**를 삭제하였음.

1)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 6. 생략

2)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 안 제33조제2항, 제3항 : 영 제32조제2항의 개정<sup>3)</sup> (2023. 8. 22. 개정·시행)에 따라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이 50만원으로 하향 및 분할 횟수가 확대됨.

▶ 제2항

	현행	개정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9개월 이내 6회
2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12개월 이내 12회

▶ 제3항 벤처기업

	현행	개정
5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6개월 이내 3회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4회	9개월 이내 6회
1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6회	12개월 이내 12회

3) 개정전)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개정후)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3. 8. 22.>

- 안 제91조제1항 : 영 제81조제1항4(2023. 8. 22. 개정·시행)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부 가능 기준금액이 50만원 하향 및 분할 횟수를 조정하였으며,

	현행	개정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1년 이내 6회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2년 이내 9회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3년 이내 12회

- 안 제91조의2(변상금 징수의 특례)가 신설 된 것은 2023년 8월 22일 영 제81조제4항5이 개정됨에 따라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을 1년 이내로 하도록 신설한 것임.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

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5)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2023. 8. 22.>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법 개정 사항 중 공유재산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부료·사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1) 안 제33조제2항의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가 삭제되었어야 하나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안 제33조제2항을 수정 할 필요가 있으며,
- 2) 안 제91조제1항제4호의 “400만원 이하” 또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별첨과 같이 수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성북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을 “영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4호 중 “초과 400만원 이하”를 “초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략)</p> <p>② <u>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 3. (생략)</p> <p>③·④ (생략)</p> <p>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조제목 개정 2013.12.31)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300만원 <u>초과 400만원 이하</u> :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p> <p>②·③ (생략)</p>	<p>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영 제32조제2항</u>-----</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1조(변상금의 분할납부) (조제목 개정 2013.12.31) ① ----</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초과</u> -----</p> <p>-----</p> <p>②·③ (현행과 같음)</p>